

형 법

문 1.(배점 2)

형법의 기능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 ① 만일 형법이“건전한 국민감정에 반하는 행위는 ... 으로 처벌한다”라고 규정한다면 이로써 형법의 법익보호적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당하게 된다.
- ② “강자(연방검찰)와 약자(피고인)간의 재판은 할 때 어느 쪽에도 기울지 않겠다고 한 재판은 지금 생각해 보면 강자 측에 기울어 있었고, 약자 측에 조금 기울었다고 생각하며 한 재판은 지금 생각해 보면 오히려 중립적이었음을 알게 되었다”는 어느 미국 연방대법관의 고백은 피고인의 인권보장보다는 일반인 보호의 상대적 우위를 인정해야 함을 강조한 것이다.
- ③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며, 형법은 도덕의 등뼈이다”라는 표현과 관련된 형법의 기능은 불법관(不法觀)에 있어서 결과반가치론으로 등장한다.
- ④ “국가형벌의 과제는 규범승인훈련에 따른 일반예방에 있다”는 주장은 형법의 소극적 일반예방기능과 관련된 것으로 단순한 규범승인훈련은 반사회윤리적 수단에 의해서도 추구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 ⑤ 위험형법은 위험사회에서 등장한 새로운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인간의 공동생활을 보호하는 사회보호적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다.

문 2.(배점 2)

형법상 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재물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요하므로 피해자가 자신의 가게 안에서 반지를 잃어버린 직후에 손님이 이를 발견하고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 함은 권원으로 인한 점유를 의미하므로 무효인 강제경매절차에서 경매목적물을 매수하여 이를 점유하고 있는 매수인의 점유는 권리행사방해죄에 있어서의 타인의 점유라고 할 수 없다.
- ③ 집 문 앞에 배달된 신문은 주인이 이를 인식하지 못한 이상 주인의 구체적인 지배의사가 존재하지 않고 신문보급소의 지배도 이미 벗어났으므로 지나가던 사람이 이를 가져간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은행에서 출납을 담당하는 여직원이 퇴근길에 자신이 관리하는 은행의 돈을 몰래 가지고 나와 유흥비로 사용한 경우에는 해당 금전에 대한 은행과의 공동점유를 침해하였으므로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⑤ 유흥주점 업주가 과도한 술값 청구에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 또는 협박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다음, 피해자들이 결제하라고 건네준 신용카드를 합의에 따라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에 대한 피해자들의 점유가 피해자들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이탈하였거나 배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문 3.(배점 3)

죄형법정주의와 관련한 <문장>의 ㉠ - ㉣에 들어갈 어구를 <보기 1>, <보기 2>에서 적절하게 연결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문장>

(㉠)은/는 (㉡)에 반하지 않으며, (㉢)은/는 (㉣)에 반한다.

<보기 1>

- A. 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3 제2항 제1호에서 과실로 사람을 치상하게 한 자가 구호행위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거나 고의로 유기함으로써 치사의 결과에 이르게 한 경우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살인죄보다 법정형을 더 무겁게 한 것
- B. 구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2항에서“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통신의 대상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 것
- C. 청소년보호법 제26조의2 제8호에서“풍기를 문란하게 하는 영업행위를 하거나 그를 목적으로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라고 규정한 것
- D. 주민등록법 제21조 제2항 제3호는 같은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등록부여 방법으로 허위의 주민등록번호를 생성하여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사용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타인에 의하여 이미 생성된 주민등록번호를 단순히 사용한 것을 위 법조 소정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킨 것으로 이해한 것

<보기 2>

- I. 법률주의
- II. 명확성의 원칙
- III. 유추해석 금지의 원칙
- IV. 적정성의 원칙

- ① ㉠-A, ㉡-I, ㉢-B, ㉣-III
- ② ㉠-C, ㉡-IV, ㉢-D, ㉣-I
- ③ ㉠-C, ㉡-II, ㉢-B, ㉣-I
- ④ ㉠-D, ㉡-II, ㉢-C, ㉣-IV
- ⑤ ㉠-B, ㉡-I, ㉢-A, ㉣-IV
- ⑥ ㉠-C, ㉡-II, ㉢-D, ㉣-I
- ⑦ ㉠-D, ㉡-III, ㉢-B, ㉣-II
- ⑧ ㉠-B, ㉡-II, ㉢-C, ㉣-III

문 4.(배점 2)

甲(만 18세)과 乙(만 10세)은 상점에서 현금을 훔치기로 하였다. 甲은 상점에서 마치 물건을 구매할 것처럼 가장하여 주인과 흥정하면서 주인의 시선을 돌리게 하였고, 그 틈을 이용해 乙이 상점 내부에 있는 소형금고에서 현금을 훔친 경우 甲의 죄책은? (단, 주거침입과 형사특별법은 제외함)

- ① 특수절도죄
- ② 절도죄의 공동정범
- ③ 특수절도죄의 교사범
- ④ 절도죄의 교사범
- ⑤ 절도죄의 간접정범

문 5.(배점 2)

강도살인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채무를 면탈할 의사로 채권자를 살해하였으나, 채무의 존재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채권자의 상속인이 존재하고 그 상속인에게 채권의 존재를 확인할 방법이 확보되어 있는 경우에는 강도살인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② 강도살인죄는 강도범인이 강도의 기회에 살인행위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강도범행의 실행중이거나 그 실행 직후 또는 실행의 범의를 포기한 직후로서 사회통념상 범죄행위가 완료되지 아니하였다고 볼 수 있는 단계에서 살인이 행하여짐을 요건으로 한다.
- ③ 술집 안에 피고인과 술집 주인 두 사람밖에 없는 상황에서 술값 지급을 요구하는 술집 주인을 살해하면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되고, 피해자 이외의 사람들에게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하여 술값 채권을 가지고 있음이 알려져 있지 아니한 탓으로 피해자의 상속인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채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없다 할 것이므로, 술값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한 것은 강도살인죄에 해당된다.
- ④ 강도범행 직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위 범행 현장으로부터 약 150m 지점에서, 화물차를 타고 도주하는 피고인을 발견하고 순찰차로 추적하여 격투 끝에 피고인을 붙잡았으나, 피고인이 너무 힘이 세고 반항이 심하여 수갑도 채우지 못한 채 피고인을 순찰차에 억지로 밀어 넣고서 과출소로 연행하고자 하였는데, 그 순간 피고인이 체포를 면하기 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로 옆에 앉아 있던 경찰관을 찔러 사망케 한 경우, 강도죄와 살인죄의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된다.
- ⑤ 강도살인죄는 고의범이므로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 그 중 1인이 사람을 살해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그 범인은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지는 것이고 다른 공범자도 살해행위에 관한 고의의 공동이 있었으면 그 또한 강도살인죄의 기수 또는 미수의 죄책을 진다.

※ 다음 사실관계를 읽고 아래 각 문항(문 6 - 7)에 대하여 답하시오.

甲은 X를 살해하기 위해서 Z를 찾아가 X의 살해를 교사하였으나, Z은 이를 거절하였다. 그 때 Z과 함께 있던 Z의 친구 A는 甲에게 살인청부업자인 B의 전화번호를 알려 주면서 한 번 찾아가 보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甲은 B를 찾아가 직접 하든 다른 누구를 시키든 X를 살해하라고 교사하였고, B는 1억원의 사례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B는 자신이 직접 실행에 착수하지 않고, C에게 5,000만원을 주면서 X의 살해를 교사하였다. C는 처음부터 X를 살해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락하는 것으로 B를 기망하여 5,000만원을 받은 후 사전에 예정되었던 대로 외국으로 이민을 가 버렸다.

문 6.(배점 2)

위의 사안에서 甲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甲의 Z에 대한 행위는 효과 없는 교사(형법 제31조 제2항)에 해당하며,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

- ② 甲의 B에 대한 행위는 실패한 교사(형법 제31조 제3항)에 해당하며, 살인미수죄의 죄책을 진다.
- ③ 甲의 Z에 대한 행위는 공범종속성설에 의할 경우 살인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 ④ 甲의 B에 대한 행위는 공범독립성설에 의할 경우 살인미수죄로 처벌될 수 있다.
- ⑤ 甲의 B에 대한 행위는 간접교사의 미수로서 불가벌이다.

문 7.(배점 2)

위의 사안에서 A, B, C의 죄책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A는 간접교사의 미수로서 살인예비죄로 처벌된다.
- ② 만약 B가 甲의 교사에 따라 X를 살해하였다면, A는 살인죄의 방조범으로 처벌된다.
- ③ B의 행위는 간접교사의 미수로서 불가벌이다.
- ④ B가 甲의 살인교사를 승낙한 행위와 C에게 살인을 교사한 행위는 각각 교사의 미수로서 실체적 경합이 된다.
- ⑤ C의 행위는 살인예비죄와 사기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문 8.(배점 2)

甲은 타인의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약 3시간에 걸쳐 절취한 신용카드를 7군데 가맹점에서 마치 자신이 카드의 진정한 소유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물품을 구입하였다. 여기서 첫째 절취한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위반한 부분(A), 둘째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각각 다른 7군데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부분(B), 셋째 이와 같이 연속된 각 행위에 해당하는 죄 사이의 관계 부분(C) 등이 문제가 된다. 甲의 죄책과 관련된 A, B, C의 각 부분에 관하여 올바르게 설명된 것으로만 연결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A부분

- ㄱ. 신용카드를 7차례 사용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수죄에 해당한다.
- ㄴ. 신용카드를 7차례 사용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의 포괄일죄에 해당한다.

B부분

- ㄷ.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7군데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면 각 행위는 실체적 경합이 된다.
- ㄹ. 절취한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물품을 구입하는 행위는 사기죄에 해당하며 7군데 가맹점에서 물품을 구입하였다면 포괄하여 일죄로 보아야 한다.

C부분

- ㅁ. A, B는 실체적 경합관계이다.
- ㅂ. A, B는 상상적 경합관계이다.
- ㅅ. A, B는 법조경합관계이다.

- ① A-ㄱ, B-ㄷ, C-ㅂ
- ② A-ㄱ, B-ㄷ, C-ㅁ
- ③ A-ㄱ, B-ㄷ, C-ㅅ
- ④ A-ㄱ, B-ㄷ, C-ㅅ
- ⑤ A-ㄴ, B-ㄹ, C-ㅅ
- ⑥ A-ㄴ, B-ㄹ, C-ㄷ
- ⑦ A-ㄴ, B-ㄷ, C-ㅁ
- ⑧ A-ㄴ, B-ㄷ, C-ㄷ

문 9.(배점 3)

수영장 안전요원 甲은 A(만 12세)가 수영장에서 질식사하여 엎어져 있는 것을, 다른 아이들이 발견한 지 약 5분이 지나서야 뒤늦게 발견하고, 인공호흡을 실시하던 중 약 10분 뒤 구급차가 오자 A의 신체에서 소생의 기미(음식물을 토함)가 나타났는데도 곧바로 인공호흡을 중단하고 구급차에 A를 인도하였다. A는 응급후송 중에 사망하였다. 수영장의 응급실 간호사 乙은 사고 당시 수영장 응급실에 대기하지 않고 호출기도 꺼놓은 채 방제실에서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고, 그 바람에 A에 대한 응급조치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였다. 甲과 乙의 형사책임에 관한 <보기>의 설명들 가운데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보기>

- ㉠ 甲이 A의 사고를 5분이 지나 발견하고, 인공호흡을 너무 성급히 중단한 점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
- ㉡ 위험증대설은 甲이 A의 사고를 좀더 신속히 발견하고 인공호흡을 충분히 실시하였을 때 A가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60%에 머무른 경우 甲의 과실행위와 A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부정한다.
- ㉢ 乙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 ㉣ 甲과 乙에게 업무상 과실과 A의 사망에 대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전제할 때 판례에 의하면 甲과 乙은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 수영장을 운영하는 회사의 회장도 판례에 의하면 업무상 과실치사죄의 공동정범이 될 수 있다.

- ① ㉠㉡ ② ㉡㉤ ③ ㉠㉤
- ④ ㉢㉣ ⑤ ㉡㉣ ⑥ ㉢㉤
- ⑦ ㉣㉤ ⑧ ㉠㉣

문 10.(배점 2)

미수범에 관한 판례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은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한 공갈죄에서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면 미수에 해당된다.
- ② 야간에 강간을 목적으로 침입한 후, 자고 있던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만지면서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비명을 지르는 바람에 도망한 경우라면 강간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 ③ 주택을 방화할 의사로 뿌린 휘발유가 인화성이 강한 상태로 주택 주변과 피해자의 몸에 적지 않게 살포되어 있는 사정을 알면서도 라이터를 켜 불꽃을 일으킴으로써 피해자의 몸에 불이 붙은 경우라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된다.
- ④ 장롱 안에 있는 옷가지에 불을 놓아 건물을 소훼하려 하였으나 불길은 치솟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물을 부어 불을 꺾었다면 현존건조물방화죄의 장애미수에 해당한다.
- ⑤ 야간에 아파트에 침입하여 물건을 훔칠 의도하에 아파트의 베란다 철제난간까지 올라가 잠겨져 있지 않은 유리창문을 열려고 하는 중 사람소리가 들려 이를 중단한 경우 야간주거침입절도죄의 미수에 해당한다.

문 11.(배점 4)

교수가 'A女の 법률상 배우자인 甲男이 乙女와 2006. 7. 1. 23:00경 1회 간음하고 2006. 7. 3. 01:00경 1회 간음하여, A가 2006. 12. 10. 甲, 乙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는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보기 1>과 같은 추가사례를 제시하자, 학생들은 추가사례를 각자 하나씩 분담하여 <보기 2>와 같이 논점을 발표하였다. 논점 발표 학생의 이름과 추가사례가 관련이 있는 것끼리 바르게 연결되어 있고 그 논점의 결론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각 추가사례는 상호 관련이 없음)

<보기 1>

- ㉠. 甲과 A의 혼인은 사실은 무효인데, 乙은 甲이 배우자 있는 남자로 알고서 甲과 간음하였다가 A로부터 고소를 당하였다. 그 후, 乙은 혼인의 효력문제는 언급함이 없이 '甲과 乙이 상간한 사실이 없는 데도 있는 것처럼 A가 乙을 무고하였다'는 취지로 A를 고소하였다.
- ㉡. 사실은 甲이 총각인 것처럼 행세하여 그 정을 모르는 乙을 혼인을 빙자하여 간음한 것이고, A도 이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甲, 乙을 간통죄로 고소하였다.
- ㉢. 乙에게도 법률상 배우자인 B男이 있었고, 甲, 乙 모두 서로 상대방이 있는 배우자있는 자임을 알았다.
- ㉣. A는 2006. 7. 5. 甲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06. 12. 15. 쌍방 2회 불출석으로 소취하간주되었고, 甲, 乙은 2006. 12. 20. 간통죄로 기소되었다.
- ㉤. 甲이 2006. 7. 5. A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A는 이에 응할 수 없다고 다투면서 2006. 8. 5. 甲을 상대로 이 사건 이전의 간통을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보기 2>

- 현주 : 간통죄의 고소는 혼인관계의 불존속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유효조건으로 하는바, A의 고소당시 이혼소송은 계속되고 있었으므로 고소의 조건을 갖춘 셈이 되고, 따라서 甲, 乙에게 간통의 적법한 증거가 있다면 유죄로 처벌된다.
- 종호 : 甲, 乙의 2006. 7. 1. 간통은 각 형법 제241조 제1항 전문과 후문에 해당하고, 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으나, 이와 각 2006. 7. 3. 간통과는 각 실제적 경합관계에 있다.
- 태영 : 결과적으로 乙의 행위가 간통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乙에게는 A에 대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유경 : A가 甲에게 간통을 종용 또는 유서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동희 : 甲이 혼인을 빙자하여 乙을 간음한 것은 간통죄에 해당하여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므로, 甲, 乙에 대한 무고죄는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① 현주 - ㉠, 유경 - ㉡
- ② 현주 - ㉢, 동희 - ㉣
- ③ 종호 - ㉡, 동희 - ㉢
- ④ 현주 - ㉠, 태영 - ㉡, 유경 - ㉢
- ⑤ 현주 - ㉢, 종호 - ㉡, 동희 - ㉣
- ⑥ 종호 - ㉣, 태영 - ㉠, 유경 - ㉠
- ⑦ 현주 - ㉢, 종호 - ㉣, 태영 - ㉡, 유경 - ㉠
- ⑧ 현주 - ㉠, 종호 - ㉣, 태영 - ㉠, 동희 - ㉡

문 26.(배점 3)

㉠에서 ㉣까지의 ()안에 아래 A에서 F까지의 문장을 적절히 넣으면 간접정범의 본질에 관한 기술이 완성된다. ㉠에서 ㉣까지의 ()안에 들어가야 할 문장을 옳게 배열한 것은?

형법 제34조에 규정된 간접정범이 정범인가 아니면 공범인가에 관하여 견해의 대립이 있다. 우선, 형법이 규정하고 있는 간접정범은 공범으로 파악하는 견해가 있다. 이 견해는(㉠)(라)는 점을 전제로 하여 (㉡)(라)고 한다. 그 근거로 (㉢)(라)는 점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하여 간접정범을 정범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다. 이 견해는 (㉣)(라)고 한다. 그리고 (㉤)(라)고 하면서 그 근거로는 (㉥)(라)는 점을 들고 있다.

- A : 현행 형법은 극단적 종속형식에 입각하고 있다.
- B : 간접정범의 본질을 우월적 의사지배에서 찾아야 한다.
- C : 간접정범을 교사와 방조의 예에 의하여 처벌하고 있다.
- D : 형법 제34조의 표제어가 '간접정범'으로 되어 있다.
- E : 형법이 교사 또는 방조로 규정한 것은 이용행위의 형태를 분류한 것에 불과하다.
- F : 공범 처벌의 불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이다.

- ① A, B, C, D, E, F ② A, F, C, B, E, D
- ③ E, F, C, D, A, B ④ F, C, B, E, D, A
- ⑤ D, A, F, C, E, B

문 27.(배점 3)

숙박업소의 인허가를 담당하는 공무원 甲은 A에게 2,000만원의 채무를 지고 있던 중, 새로 숙박업을 하려는 B이 甲에게 접근하여 1,000만원을 은밀히 제공하려고 하자 차라리 A에게 직접 건네주라고 말하였다. B은 甲의 말대로 A의 은행구좌로 1,000만원을 송금하였다. 그 후 담당공무원이 변경되어 甲의 업무를 공무원 B가 담당하게 되었다. B과 경쟁관계에 있는 C은 B이 공무원 B에게 2,000만원을 주었다는 소문을 사실로 알고 B의 숙박업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민영텔레비전 방송사 기자인 D에게 이러한 내용을 제보하였으며, D은 특종이라고 판단하여 별다른 확인 없이 방송하였다. 이에 관한 다음 <보기>의 기술 중 옳은 것으로 짝지어진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보기>
ㄱ. 甲은 제3자인 B에게 뇌물을 제공하게 하였으므로 제3자뇌물 제공죄를 범한 것이나, 부정한 청탁의 준부가 문제될 수 있다.
ㄴ. 甲은 부정한 청탁이 없다고 하여도 대가관계만 인정된다면 수뢰죄로 처벌될 수 있다.
ㄷ. C은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B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허위 사실적시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ㄹ. D은 사실확인 없이 허위의 사실을 보도하였으므로 진실이라고 믿은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명예훼손죄의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

- ① ㄱ, ㄴ ② ㄱ, ㄷ
- ③ ㄴ, ㄷ ④ ㄴ, ㄹ
- ⑤ ㄷ, ㄹ

문 28.(배점 3)

친족상도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가. 강도죄와 강제집행면탈죄를 제외한 모든 재산범죄와 그 미수범에 대해서 형법 제328조(친족간의 범행과 고소)가 준용된다.
- 나. 아버지의 방에서 다른 사람의 물건으로 알고 절취하였는데 아버지의 물건이었을 경우에는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다. 장물범이 본범의 피해자와 동거하지 않는 직계혈족인 경우에는,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 라. 호주의 직계비속 장남자 아닌 가족인 남자가 혼인하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분가되어야 함에도 호적상 법정분가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호주의 호적부에 가족으로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혼인신고를 한 이후에는 형법 제328조의 적용에 있어서 호주의 가족이라는 신분관계는 소멸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마. 사기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피기망자와 피해자 모두 사이에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법원을 기망하여 제3자의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와 사기죄를 범한 자가 직계혈족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그 형을 면제할 수 없다.

- ① 가(×), 나(×), 다(○), 라(×), 마(○)
- ② 가(×), 나(×), 다(×), 라(○), 마(×)
- ③ 가(○), 나(○), 다(○), 라(×), 마(×)
- ④ 가(×), 나(×), 다(×), 라(○), 마(○)
- ⑤ 가(○), 나(○), 다(○), 라(○), 마(×)
- ⑥ 가(○), 나(○), 다(×), 라(×), 마(○)
- ⑦ 가(×), 나(○), 다(×), 라(○), 마(×)
- ⑧ 가(○), 나(×), 다(○), 라(×), 마(○)

문 29.(배점 2)

甲은 심야에 길가에 주차된 자동차를 골라 그 문을 열고 동전 등 물건을 훔치는 범행을 계속 해오던 중, 어느 날 밤 등산용 칼을 휴대하고 범행대상으로 삼은 자동차를 물색하다가 경찰순찰차가 나타나자 급히 멈추었다. 그리고 甲은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마치 자신의 집에 들어가는 것처럼 B의 집의 문을 열고 들어가다가 B의 인기척을 듣고 몸의 일부만 들어간 상태에서 돌아서 나온 경우, 甲의 죄책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범행대상인 자동차를 물색하는 정도로는 아직 절도의 실행에 착수했다고 보기 어렵다.
- ② 흥기를 휴대했다 하더라도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특수절도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 ③ 준강도죄의 실행의 착수는 인정되지 않지만 절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흥기로 사용할 의도로 등산용 칼을 휴대한 이상 준강도의 예비·음모로서 강도예비·음모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 ④ 타인의 주거의 문을 열고 몸의 일부가 들어간 이상 주거침입죄의 실행의 착수는 긍정된다.
- ⑤ 신체의 일부분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지만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는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의 미수에 그친다고 보아야 한다.

문 30.(배점 2)

다음 중 판례에 따르면 ()안의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 ① 부동산에 관하여 가장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 ② 타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을 그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이 마치 자신의 것인 것처럼 행사한 경우(공문서부정행사죄)
- ③ 통화위조범이 위조통화라는 사실을 알고 있는 친구에게 이를 유통시키리라 예상하면서 교부한 경우(위조통화행사죄)
- ④ 위조된 약속어음을 전자복사기로 복사하여 그 사본을 사용한 경우(위조유가증권행사죄)
- ⑤ 1인주주회사에 있어서 1인주주가 특정인과의 합의가 없이 주주총회의 소집 등 상법 소정의 형식적인 절차도 거치지 않고 그를 이사의 지위에서 해임하였다는 내용을 법인등기부에 기재한 경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죄 및 동행사죄)

문 31.(배점 2)

<예시문>의 ㉠ ~ ㉣ 각 행위에 대한 형법적 평가를 할 경우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예시문> ㉠ 甲은 밤늦게 귀가하는 丙의 뒤로 몰래 접근하여 손가방을 강제로 뺏아채었다. 이에 丙이 자신의 손가방을 가지고 도주하는 甲의 옷을 잡자, 甲은 체포를 면하려고 충동적으로 丙의 손을 뿌리치고 도주하기 시작하였다. ㉡ 이때 골목길을 순찰하던 경찰관 丁이 이를 목격하고 甲을 추적하기 시작하였다. 도주하던 甲은 막다른 골목길에 이르자, 체포를 면탈하기 위해 상점 앞에 놓여 있는 빈 맥주병을 집어 들어 경찰관 丁의 어깨를 내리친 후 그의 추격을 따돌렸다. ㉢ 丙의 손가방 안에 들어 있는 자기앞수표 10만원권 1장을 발견한 甲은 그 자기앞수표를 2만원 상당의 음식대금으로 교부하고, 8만원을 거스름돈으로 받았다. ㉣ 이후 경찰의 수표추적으로 인하여 甲에게 혐의가 쏠리자 甲은 쌍둥이 동생 乙에게 수사기관에서 범인임을 자처하고 대신 형사처벌을 받을 것을 부탁하였다. 이에 乙은 甲의 부탁대로 甲의 형사처벌을 면하게 할 목적으로 위사건조사를 담당할 경찰관에게 자신이 범인이라고 진술하였다.

- ① ㉠의 경우 준강도죄가 성립한다.
- ② ㉡의 경우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의 상상적 경합이 된다.
- ③ ㉢의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
- ④ ㉣의 경우 甲에게는 범인도피죄의 교사범이 성립하지 아니한다.
- ⑤ ㉣의 경우 乙에게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한다.

문 32.(배점 2)

다음 기술 중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17세의 소녀를 간음할 목적으로 약취·유인하였으나 다음날 그 소녀가 탈출하여 간음하지 못한 경우 간음목적약취·유인미수죄가 성립한다.
- ② 예금주인 현금카드 소유자로부터 일정한 금액의 현금을 인출해 오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이와 함께 현금카드를 건네받은 것을 기화로 그 위임을 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현금을 인출한 경우 절도죄가 성립한다.

- ③ 환전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교부받은 돈을 그 목적과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임의로 위탁자에 대한 채권에 상계충당한 경우 이는 당초 위탁한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횡령죄를 구성한다고 볼 것이고, 위탁자에 대한 채권의 존재는 횡령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상계할 수 있는 반대채권이 있어 그에 상계충당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용도 내지 목적을 특정하여 위탁한 돈의 반환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
- ④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라면,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더라도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므로, 근로자가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요구에 불응하여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 ⑤ 일반인으로 하여금 명의인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 수 있는 정도의 형식과 외관을 갖추고 있지 못한 사문서인 경우, 사문서의 명의인이 허무인이거나 또는 문서의 작성일자 전에 이미 사망하였을지라도 그러한 문서 역시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사문서위조죄가 성립한다.

문 33.(배점 2)

다음 기술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

- ① 기업의 영업비밀을 사외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한 회사의 직원이 경제적인 대가를 얻기 위하여 경쟁업체에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업무상 배임죄를 구성한다.
- ② 점유개정 방법으로 자신의 동산에 관하여 이중으로 양도담보 설정계약을 체결한 채무자가, 양도담보에 제공된 동산을 제3자에게 현실인도 방법으로 처분한 경우, 채무자는 처음 점유개정 방법에 의한 양도담보설정계약을 체결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한다.
- ③ 수개의 학교법인을 운영하는 자가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각 학교법인은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소유의 주체로서 이를 실질적으로 1개의 학교법인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각 학교법인의 금원을 다른 학교법인을 위하여 사용한 경우 이를 단순히 예산항목을 유용하거나 장부상의 분식이나 이동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고, 각 학교법인 사이에서의 자금이동이 단순한 대차관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④ 권한없이 인터넷뱅킹으로 타인의 예금계좌에서 자신의 예금계좌로 돈을 이체한 후 그 중 일부를 현금자동지급기에서 인출하여 그 정을 아는 사람에게 교부한 경우, 인출한 돈은 절도로 취득한 물건이기 때문에 이를 취득한 사람에게 장물취득죄가 성립한다.
- ⑤ 지역신문의 발행인이 시정에 관한 비판기사 및 사실을 보도하고 관련 공무원에게 광고의뢰 및 직보배정을 타 신문사와 같은 수준으로 높게 해달라고 요청한 경우는 공갈죄의 수단으로서 그 상대방을 협박하였다고 볼 수 없다.

